

금융사고 실태 조사 이상경*

(Sang-Kyung Lee)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Abstract

Ways to prevent financial fraud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financial frauds and the reasons for their occurrence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examples of financial frauds in domestic and abroad, this study presents ways to prevent such financial scams. The preventive measures consist of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occurrence of financial frauds and during normal financial operations. The activities are as follows: 1. Preventive activity should be strengthened before the occurrence of financial frauds. That is, first, the enforcement of consistent internal control is needed. Second, in order to block the

*제1저자 :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 투고일 : 2014. 6. 30. 심사일 : 2014. 7. 30. 게재확정일 : 2014. 8. 30.

probability of financial frauds involved with employees, ethics education and a reward program for inside tippers need to be run. Third,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apply for comprehensive insurance policy to minimize the lost in case. 2. Preventive activity should be strengthened during normal financial operations. First, self authentication system for customers needs to be introduced. Second, dealings of day, week, and month need to be thoroughly checked and the system of audit needs to be expanded. Third, message service for the information on financial frauds and their preventive measures needs to be expanded. Fourth, public notification system against examples of financial frauds needs to be expanded. 3. Preventive activity after the occurrence of financial frauds should be strengthened. First, awareness for preventive measures such as imposing penalty on the manager needs to be enhanced. Second, strict restrictions on financial frauders such as a criminal charge needs to be strengthened. Third, there should be legal devices and resolutions in order to retrieve all the money deceived by financial frauds.

keyword: 금융사고, 금융사고대책, 내부통제, 금융사고예방, 금융사고사례, 리스크관리

I. 서론

금융기관을 우리의 신체구조인 몸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심장기관과 같다 해도 과언이 되지 않을 만큼 우리경제를 힘차게, 그리고 튼튼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심장에서 생성된 맑고 깨끗한 혈액을 필요로 하는 곳은 몸속 어디든지 실어 나르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듯 중요한 심장기관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거의 매일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잇따른 사고가 바로 주요한 요인이다. 금융기관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구분 없이, 금융사고 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00억원 이하이든 금액의 많고, 적음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뉴스, 정보를 접하면서 지금의 금융기관을 믿고 거래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사고는 금전사고와 금융질서문란행위로 구분된다. 금전사고는 횡령·유용, 사기, 업무상 배임 및 도난·피탈 사고 등 금융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이며, 금융질서문란행위는 사금융 알선, 금융실명법 위반, 금품수수 등 금전적 손실은 없으나 금융관계법을 위반하는 사고이다.¹⁾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사고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피해자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 된다.

최근 10년간 대형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금액이 1조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정감사자료에서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10년간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2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20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조1천756억원으로 집계됐다.

<표 1> 최근 10년간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

(단위 : 백만원)

연도	금액	사고회사	사고유형
2004	40,000	조흥은행	횡령
	65,000	국민은행	CD위조 및 횡령
2005	20,000	조흥은행	CD위조 및 횡령
2006	71,900	신한은행	업무상 배임(불법대출)
	49,935	외환은행	횡령
	27,055	SC제일은행	감정서 위조·사기대출
2007	42,550	대신자산운용	횡령
2008	413,220	경남은행	지급보증서위조
	23,600	플러스자산은행	사기
	28,380	외환은행	업무상배임
2009	11,000	메리츠종합금융	부실여신
	22,700	SC제일은행	지급보증서 위조·대출
	11,200	메릴린치	횡령
	39,500	보해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2010	17,920	서울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2011	233,699	국민은행	불법대출
	19,647	농협중앙회	파생손실축소
2013	10,000	국민은행	수표위조
	11,186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위조
	17,128	씨티은행	매출채권 매입서류 위조
합계	1,175,620		

*자료; 2014. 최근 10년간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자료 국회 기획재정위 박원석 의원실

대부분의 사고는 은행에서 일어났다. 대형 금융사고 20건 중 은행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산운용·증권·저축은행이 각각 2건이었다.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70%에 달한다.²⁾ 금융이란 돈을 유통해주는 일을 말하고, 금융기관이란 금융을 영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돈을 사용하고 남아서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돈이 모자라서 빌리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의 수요자로 분류가 되며, 이와 같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금융기관이다. 즉 자금의 공급자 자신이 자금 수요자를 물색하여 소유하고 있는 돈을 직접 빌려주는 방법보다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금이란 상품을 구입하고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자금의 수요자에게 직접 빌려주는 방법보다 안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금의 수요자 측면에서도 자금의 공급자를 금융시장에서 직접 찾는 방법보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필요자금을 빌리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자금의 수요자, 공급자 양자 모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 굳게 믿어 왔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어느 기관보다 더 신뢰하며 준 공공기관으로 여겨왔던 금융기관의 최근의 행태를 보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신뢰 추락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경제 전반을 불신하게 하고, 정부를 불신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보다 금융산업이 훨씬 발전된 외국 금융기관의 사고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금융사고 대책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금융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나라 금융사고 종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너진 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경제 동력을 전달하는 굳건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길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금융사고 현황 및 발생원인

1. 금융사고의 개념

1.1 금융사고의 정의

금융사고란 고객이 맡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은행 안팎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초래 행위나 금융관련 범죄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임직원이 금융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은행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은행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한 경우(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를 가리킨다. 또한 금융사고는 은행 내부직원인 아닌 외부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대출사기, 신용장이나 선적서류 위조에 의한 외환사고, 어음수수·양

도성 예금증서(CD)등의 위변조 및 딱지어음 사기, 현송자금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 탈취, 전자금융 관련사고 등 외부인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이다.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큰 문제가 된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의 금융사고는 결국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개별 은행들로도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³⁾

1.2 금융사고 유형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 유형을 보면 횡령, 금품수수, 금융실명제 위반, 사적급진, 전자금융, 도난, 피탈, 컴퓨터관련 사고 등으로 분류가 되며,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⁴⁾

<표 2> 사고발생 유형별 분류

사고유형	주요 세부 내용
업무부당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담보물 부당 고가감정 ▪ 무자격 연대보증인 입보 ▪ 무자격 담보물(담보취득 제한 부동산)취급 ▪ 자필확인 소홀 및 기타 부당 대출
횡령 (유용,편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금 횡령 또는 고객예금 횡취
분실,도난,피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도에 의한 현금(시제금)도난 ▪ 자금 현금수송 중 현금분실 및 도난
실적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채무자에게 신규 및 증액 대출하여 대출금 미수이자 회수결산 손익을 위하여 미수수의 부당 보정 ▪ 예금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직원명의 대출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제 위반 ▪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대차 ▪ 사기(fraud)에 의한 대출 ▪ 복무규정 위반 ▪ 전자금융 사고 ▪ 컴퓨터 관련 사고

위 표에서 제시한 사고유형을 조금 더 쉽

게 이해하기 위하여 사고유형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사고내용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2.1 횡령, 유용

횡령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또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범죄”⁵⁾를 의미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 사용하는 것”⁶⁾을 말한다. 즉, 타인의 돈 또는 재산을 사사로이 사용하며, 원래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자의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타인의 돈 또는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 유용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⁷⁾

1.2.2 금품수수

금품수수는 대부분이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이다.그 사례를 살펴보면 대출청탁 거래처와의 유착 등에 영업점장 전결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가게 당좌개설 자격요인이 미달 시 영업점장 특인으로 당좌거래를 허용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제3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⁸⁾

1.2.3 금융실명제 위반

현행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거래는 금융실명제 사용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수익담보대출채권을 취급, 횡령하는 과정에서 기 개설된 계좌의

실명 확인증표를 제복사하여 예금계좌를 복사하는 경우, 사고원인은 사고자가 대출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전산등록 처리하는 등 업무처리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지 않았고, 부동산 저당권 대출 취급 시 동 대전입금을 목적으로 징구한 차주실명증표 사본을 제복사하는 방법으로 신규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 등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 미이행 등의 사례가 있었다.⁹⁾

1.2.4 사적 금전대차

중간 간부급이상의 직원에 의해 발생하고, 예금실적 유지를 위하여 거래처와의 유착에 따른 과도한 금융편의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사적여유자금을 안전하고 유리하게 운영하기 위한 욕구에서 발생한다. 그 사례를 보면 고객예금을 담보로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취급 한 후 동 대전으로 사채업자와 사적금전대차를 한 경우, 거래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고객과의 금전대차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1.2.5 전자금융

최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고객입장에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수료도 적게 소요되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¹¹⁾

1.2.6 도난 피탈

창구거래의 감소추세와 달리 인터넷뱅킹과

더불어 금융 자동화기기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자동화기기(CD/ATM) 현금피탈, 영업점내 현금피탈, 수송 중 현금피탈 사건 등도 증가추세에 있다.¹²⁾

<표 3> 도난,피탈사고 현황

구분	2000년		2001		20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CD/ATM	1	1.5	1	0.5	6	1.7
영업점내 현금피탈	2	0.3	6	3.6	6	0.5
수송중현금피탈	4	13	6	65	5	4.5

자료:금감원,은행.비은행권 금융사고 현황과 대책,2003>

2. 금융사고 유형별 사고사례

금융사고 유형별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금융기관마다, 또는 금융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 금융기관에서 금융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모두 인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사고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상호금융조합의 횡령·유용사고

동일업무를 장기간(5년 이상) 수행하는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을 임의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들 사고 금융회사에서는 자체감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중요 증서·인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사고 직원들은 부채가 과다하거나 도박, 사치성 소비성향

을 보이는 등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1 주요사례

단위농협의 직원은 본인의 사치성 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06.5월~'11.11월 기간 중 친분 있는 고령 고객들의 신분증, 인감 등을 도용하여 예탁금을 중도해지하여 26억원을 횡령한 바 있다.¹³⁾

2.2. 여신취급 관련사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외부인과 공모하여 담보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방법으로 여신을 취급(업무상 배임)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여신심사 및 여신실행 등 이해상충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간의 직무분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것이 주요 사고 원인이 되었다.

2.2.1 주요사례1

신협 직원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담보의 감정가액을 과다산정, 유효담보가액을 47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자기앞수표 위·변조, 대출서류 허위작성 등 외부 사기행위에 대비한 내부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고 여신을 제공하는 사고(사기)도 다수 발생하였다.

2.2.2 주요사례

은행 △△△지점은 위조된 표지어음을 담보로 신규거래처에 기업대출 48억원을 취급하였다.¹⁴⁾

2.3. 금융투자회사의 횡령·유용사고

임직원이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

객예탁금을 횡령하여, 무리한 투자로 탕진하는 사고가 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고 임직원의 윤리의식 부족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고객정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데 그 원인이 있다하겠다.

2.3.1 주요사례

증권 직원은 무단발급 처리한 고객 증권카드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 수탁 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업무용 단말기로 고객의 자금을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16억원을 횡령하였다.¹⁵⁾

3. 금융사고 추세

금융사고는 200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평균적으로 매년 약 470여건이 발생, 일평균 1.9건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금융사고의 금액은 계속 증가세로, 2005년의 경우 금융사고 건수는 적었으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덧붙여 금융사고의 형태를 보면, 과거에는 불법대출이나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기가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2년~2005년 중 전체 금융사고의 약 64%를 횡령사고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2010년 6월 기간 중의 자료를 보면 전체금융사고 발생은 연평균 218건, 1053억원이며, 횡령·유용이 금융사고의 대부분(83.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기(8.0%), 도난·피탈(3.9%)순으로, 최근의 금융사고 역시 횡령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⁶⁾

4. 금융사고 영향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모든 기관 즉, 국가, 국민, 금융관련 관계기관 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에 미치는 영향만 언급하기로 한다. 금융사고의 영향은 ① 은행 ② 사고자 ③ 관리자 측면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은행 측면에서는 은행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언론보도와 민원 발생 등으로 공신력을 실추하게 된다. 또한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으로 영업력이 저하되며, 은행 내 상호갈등 및 불신감이 팽배하게 되고, 경영실태 평가 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주주의 부를 감소시킨다.

② 사고자 측면에서는 금융사고금의 변상조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징계절차에 따라 문책(감봉, 승진, 누락)등 인사상 불이익 및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받을 수 있고, 사고자 관리를 통해 금융업계의 재취업이 불허될 수 있다.

③ 관리자 측면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엄중문책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고, 관리책임 과실비율에 따른 변상조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다.¹⁷⁾

5 금융사고의 특징

5.1 내부인에 의한 금융사고가 주류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보면 약 90% 정도가 내부직원과 관련한 사고임을 표표<>을 통해 볼 수 있다. 발생

건수 면에서는 1999년 97.7%에서 2002년중 86.4%로 11.3%p 감소하였으나, 그 사고금액 면에서는 9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회사 내부의 자체통제시스템이 잘못되었거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¹⁸⁾

<표 4> 금융사고 발생건수 및 금액, 구성비율

구분	금액/건수/비율, 금액:억원			
	1999	2000	2001	2002
내부인에 의한사고 (구성비)	666 (167) (97.7)	3,896 (253) (95.8)	1,752 (269) (91.8)	2,784 (246) (86.9)
외부인에 의한사고 (구성비)	11 (4) (2.3)	39 (11) (4.2)	170 (24) (8.2)	58 (37) (13.1)
합계	677 (171) (100.0)	3,935 (264) (100.0)	1,922 (293) (100.0)	2,842 (283) (100.0)

2. 사고 적발에 장시간 소요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적발된 768건의 내부직원 관련사고 중, 359건(46.7%)이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견되었다. 6개월이상 1년의 시간이 소요된 경우도 145건으로 전체의 18.9%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의 경우 사고자들이 금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전산조작 등을 통하여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사고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표 5> 금융사고 적발건수에 따른 소요시간

(단위 : 건)

구분	2000	2001	2002
1년이상	116	125	118
1년~6월이상	41	51	53
6월~3월이상	25	48	18
3월이하	71	45	57
합계	253	269	246

3. 사고금액의 거액화 경향

금융사고 건당 금액규모는 99년의 4.0억원 수준에서 2000년에는 14.9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 중에도 약 10억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금융업무가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됨에 따라 간단한 전산 조작만으로 대형의 금융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금융사고 금액의 거액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표 6>을 통해 알 수 있다.²⁰⁾

<표 6>연도별 평균사고금액 현황

(단위:건,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건수	171	264	293	283
금액	677	3,935	1,922	2,842
평균사고금액	4.0	14.9	6.6	10.0
사고금액 10억원이상 사고건수	16	52	45	38

4. 영업점 현금피탈 등 강력범죄와 함께 신종지능형 범죄의 등장

2002년 들어 증시침체에 따른 주식투자 실패와 신용카드 연체증가 등으로 금융범죄 유인 증가되었다. 2002년 중 관련사고 내역을 보면 현금지급기 피탈사고가 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현송 중 피탈사고도 5건이 발생되었다.

<표 7>연도별 현금피탈 현황

(단위:건, 피탈금액)

구분	2000	2001	2002
현금지급기 피탈	1, 1.5	1, 0.5	6, 1.7
영업점내 현금피탈	2, 0.3	6, 3.6	6, 0.5
현송중 피탈	4, 13	6, 65	5, 4.5

사무자동화기기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다 모방적 성격의 범죄가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집중 발생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²¹⁾

6. 금융사고 발생원인

금융사고의 발생요인별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1 부실한 내부통제

먼저 부실한 내부통제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즉,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하다보면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하다 하겠다. 그 결과 금융사고 원인을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금융회사가 생존을 위한 외형규모와 수익성 위주의 성장전략에 치중하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나 투자를 손실방지를 통한 『수익』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수익성 『지출』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사업별 직원 성과제 도입, 각종 캠페인성 업적신장 강조기간 운용 등으로 영업점 직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마인드가 쇠저였다.²²⁾

다음으로 영업점의 내부통제절차 이행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감축으로 영업점의 1인당 업무부담 가중이 심화되었다. 둘째, 자점감사기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초임 직원 등 부적격 직원을 자점감사자로 배치하거나, 자점감사자가 타업무를 겸무하는 사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히 영업점의 차장급 중간관리자 감축과 영업점장 세대교체 등으로 영업수행과정에서의 Check and Balance 기능이 매우 취약해졌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자체의 결함이 사고요인의 한 원인이 되었다. 즉, 금융회사 직원들의 내부통제절차 미 준수 뿐만 아니라, 통제장치 자체의 결함도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이 되었다.²³⁾

6.2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결함들이 사고원인의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감퇴되었다. 그 결과 ① 신분 불안, 업무부담 증가 등으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분위기를 수행할 만한 여건과 서로 맞지 않았다.

②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이 퇴조하고, 조직의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둘째, 주식투자에 대한 대중화로 금융회사 직원들의 사고유혹이 자연스럽게 증대되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식투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금융회사 직원 중에서도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하는 심리

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② 사회적으로 한탕주의 심리가 확산되어, 금전을 다루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횡령 등의 범죄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③ 무분별한 소비생활에서 비롯된 신용카드 채무 또는 사채상환에 대한 경제적 압박, 유흥경비 등에 과다한 지출 등도 사고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²⁴⁾

6.3 금융회사의 사고자에 대한 제재 관대화 경향

즉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자에 대한 제재의 관대화가 금융사고를 쉽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인 금융범죄 사고에 대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사고금의 미회수시 또는 사고금액이 큰 경우에만 형사고발하는 등의 관대한 제재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퇴보하게 한다. 즉, ① 금융회사의 이 같은 관대한 처리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범죄경시 풍조를 유발하고 금융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하는데 일조한다. ② 또한 금융사고 전력자에 대해서도 사고기록이 금융회사 간에 공유되지 못한 관계로 재소자의 금융회사 재취업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⁵⁾

6.4 현금지급이 많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각종 범죄유혹 가중

첫째, 외환위기 이후 일부 계층의 생계불안이나 무절제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연체증가 등이 한탕주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반해 금융회사의 자체방범 능력은 아직도 매우 취약한 상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용역업체에 경비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사고예방기능으로는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② 또한 총기 등으로 무장한 강력범들의 조직적, 계획적인 전문 강도행위에 대해 금융회사 경비인력의 방법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

둘째,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벽지 소재 점포가 금융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① 직원수가 많지 않은 데다 예산문제로 자체경비능력이 절대적으로 불충분하다. ② 사고발생시 경비회사 또는 경찰관서의 현장출동에도 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이 현실이다.²⁶⁾

6.5 신분증 위조 등 지능형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첫째, 최근 들어 위조신분증에 의한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①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대부분의 신분증이 위조의 대상이 된다. ② 특히, 2002년 이전에 발급된 신분증의 경우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지원되지 쉬어, 위조사고에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③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여타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의 경우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④ 또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절차이행 소홀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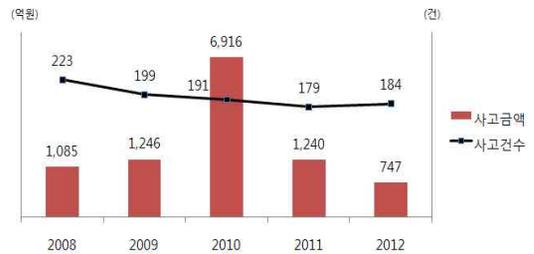
2 국내 금융사고 현황

국내의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그림 1>과 같다.

2.2.1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현황

<그림 1>은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8년에

223건의 사고가 발생되어 그 피해금액은 1,085억원에 달했다. 2009년에는 전년도 보다 사고건수는 199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사고금액은 1,24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사고가 191건으로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으나, 피해금액은 6,916억원으로 역대 최고피해금액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을 정점으로 사고건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피해 금액은 크게 감소되지 않는 결과를 <그림 1>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림 1>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 2012년 금융사고 현황 및 감독 대응방안.2013, pp3

<표 8> 금융기관 최근 5년간 금융사고 유형별 내용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횡령·유용	315 (179)	989 (167)	1,057 (143)	270 (128)	422 (142)
배 임	513 (10)	87 (10)	5,619 (15)	525 (17)	150 (17)
사 기	251 (26)	170 (21)	239 (29)	431 (28)	174 (20)
도난·피탈	6(8)	0(1)	1(4)	13(6)	1(5)
합 계	1,085 (223)	1,246 (199)	6,916 (191)	1,240 (179)	747 (184)

* () 안은 금융사고 건수

**자료:2012년 금융사고 현황 및 감독 대응 방안.2013, pp1

다음으로 금융사고 유형별 그 내용을 살펴보면<표 8>과 같다. 먼저 2008년에는 횡령·유용이 179건의 사고가 발생되어 피해 금액은 315억원에 달했으며, 배임의 경우 10건에 513억원, 사기에 의한 사고는 26건에 251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난·피탈은 8건에 사고금액은 8억원이며 그 합계를 살펴보면 223건에 1,08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되었다. 2009년에는 199건에 1,246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되었고, 2010년에는 191건에 6,916억원의 금융사고 금액이 집계되었다. 전년도에 비하여 사고건수가 적었지만, 사고금액은 무려 5배이상 증가된 6,916억원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2011년도에는 사고건수 179건에 1240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으며, 2012년에는 184건 747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되어 발생건수 및 사고금액이 점차적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표상으로는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이 적다라고 할 수 있으나, 사고건수 대비 사고금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사고유형별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고유형별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은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고금액만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2.2 권역별,유형별 사고 현황

<표 9> 권역별, 유형별 사고 현황

(단위 : 건, 억원)

<표 9>는 금융사고 권역별, 유형별 사고 현황 5개년을 제시하였다. 2008년 223건의 금융사고에 1,085억원의 금액사고가 나타났다. 이 중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을 보면 557억원에 해당되며, 사고건수는 47건에 해당이 되어 건수에 대비한 사고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표 9>를 통해 알 수 있다. 당해연도 사고유형별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배임이 사고금액이 513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고 건수는 10건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은행에서 5,865억원이라는 사고금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사고건수는 58건에 해당된다. 사고유형은 배임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내부적 통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감시기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금융감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으로써 2012년에는 금융사고금액 747억원 사고건수 184건으로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현실이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으나, 금융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이를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실질적인 사고예방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고 금액	사고 금액	사고 금액	사고 금액	사고 금액
은행	횡령 유용	180 (36)	327 (37)	676 (43)	173 (50)	154 (47)
	배임	323 (2)	3 (3)	5,135 (5)	217 (7)	54 (1)
	사기	49 (6)	58 (7)	53 (7)	131 (11)	74 (8)
	도난 피탈	5 (3)	- (1)	1 (3)	13 (6)	1 (3)
	계	557 (47)	388 (48)	5,865 (58)	534 (74)	283 (59)
중소 서민	횡령 유용	69 (56)	139 (53)	93 (47)	45 (30)	184 (54)
	배임	106 (7)	84 (5)	476 (7)	305 (8)	88 (14)
	사기	125 (10)	110 (6)	66 (15)	250 (11)	32 (5)
	도난 피탈	1 (3)	-	- (1)	-	0 (2)
	계	301 (76)	333 (64)	635 (70)	600 (49)	304 (75)
금융 투자	횡령 유용	40 (8)	473 (7)	264 (12)	34 (9)	56 (11)
	배임	84 (1)	-	6 (2)	1 (1)	8 (2)
	사기	76 (4)	-	118 (3)	36 (2)	60 (1)
	도난 피탈	-	-	-	-	-
	계	200 (13)	473 (7)	387 (17)	71 (12)	124 (14)
보험	횡령 유용	26 (79)	49 (70)	25 (41)	18 (39)	28 (30)
	배임	-	0 (2)	2 (1)	3 (1)	-
	사기	1 (6)	2 (8)	2 (4)	14 (4)	8 (6)
	도난 피탈	0 (2)	-	-	-	-
	계	27 (87)	51 (80)	29 (46)	35 (44)	36 (36)
합계	횡령 유용	315 (179)	989 (167)	1,057 (143)	270 (128)	422 (142)
	배임	513 (10)	87 (10)	5,619 (15)	525 (17)	150 (17)
	사기	251 (26)	170 (21)	239 (29)	431 (28)	174 (20)
	도난 피탈	6 (8)	- (1)	1(4)	13 (6)	1 (5)
	계	1,085 (223)	1,246 (199)	6,916 (191)	1,240 (179)	747 (184)

*자료:2012년 금융사고 현황 및 감독 대응 방안.2013, pp6

2.3 금융선진국 금융사고 현황 및 사고사례

우리나라보다 발달된 금융선진국에서의 금융사고 현황 및 사고사례 몇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표적인 해외 금융사고 사례로는 영국의 배어링스, 일본의 대화은행, 미국의 올퍼스트은행 등이 있다. 이 사례들은 금융기관에 있어서 내부 통제기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의 사례는 중국에서 금융사고가 얼마나 큰 범죄로 취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²⁸⁾

1) 영국

1862년에 설립된 배어링스은행은 세계적인 금융기관이었다. 200년 이상의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던 이 은행은 닉 리슨이라는 20대 젊은 직원 1명으로 인하여 파산당하고, 1995년 2월 네덜란드의 ING사에 단돈 1파운드에 합병되고 말았다. 배어링스은행의 자회사인 싱가포르 배어링선물회사에서 닉 리슨은 일본 오사카 거래소와 싱가포르 거래소간 선물 차익거래를 담당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닉 리슨이 손해를 감추기 위하여 특별계좌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닉 리슨은 차익거래 이외에도 투기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손실을 특별계좌에 감추었던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특별계좌에 있는 손실금액은 점점 불어났고, 결국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말았다. 더욱이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리스크가 더 큰 상품에 손을 대게 되고, 여기에서도 큰 손실을 보게 됨에 따라 누적 총 손실은 1994년에 2천 8백만파운드에 달하게 되었다.(476억원/1파운드=1,700원). 이와 같은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허위 거래를 통하여 닉 리슨은

업적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어 1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기도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95년 1월 일본에서는 고베지진이 발생하였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닉 리슨의 손실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는 이제까지의 손실을 일시에 만회하기 위하여 큰 모험을 하게 된다. 고베지진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일본경제가 회복되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하여 주가지수 선물을 대량 매입하고, 일존국채선물에도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주가지수는 하락을 거듭하고, 투자는 실패하여 결국에는 총 손실금액이 13억달러(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닉 리슨 본인이 금융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장부정리까지 함으로써 사실상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 리슨은 아무런 내부통제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한 직원으로 인해 거대한 금융기관이 파산당하였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²⁹⁾

2) 일본

1995년 9월 대화은행 뉴욕에 있는 44세의 직원 이구치 도시히테가 11억달러(1조1천억원)로 추정되는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이 금액은 영국의 베어링스은행의 손실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에서 열두 번째로 큰 대화은행 자본금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구치는 일본인 2세로서 대화은행 뉴욕사무소에 채권 운용자로 채용되어 1984년부터 재무성 증권 거래를 맡았다. 당시 일본 본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재무성 증권

거래를 맡았다. 당시 일본 본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재무성 증권을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사고에 대해서 별다른 우려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구치는 일본 본점의 허가 없이 금리 등락을 이용하여 채권의 만기 전 매매를 통하여 자본이익을 구구하려는 투자과정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초기에 이를 보고 하였으면 문제가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구치는 손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본 본점이 보고받는 보유고와 실제 잔고 간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구치는 일시적 손실을 언젠가는 만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채권거래를 하였지만, 결과는 손실금액만 증가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1984년에 시작한 거래는 1995년 9월에 이르러 11억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을 남기고 마감하기에 이르렀다. 채권잔고를 속여 손실을 감추기에는 이미 손실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것이었다. 이구치 본인은 1995년 10월 사기 및 하위문서 작성 죄로 4년 금고 및 26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대화은행은 1996년 2월에 거액의 벌금을 물고 미국 내 영업점을 전부 폐쇄하게 되었다.

대화은행의 사건은 손실규모도 컸지만 11년간이나 미국과 일본 양국의 감독당국의 운을 피해서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이구치의 자백이 없었다면 사건 발견이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또 하나는 여겨 볼 사항은 사고를 보고 받은 대화은행 본점과 일본 대장성이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구치는 자서전에서 미국과 일본 양국의 감독기관의 무능과 태만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감독기관의 정기감사를 몹시 두려워하였지만, 사실상 속이기는 쉬웠다고 쓰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점은 이구치가 채권 매매를 하고 장부 정리와 채권 인수 및 보관까지 담당함으로써 사실상 사고를 막을 견제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³⁰⁾

3) 미국

영국, 일본과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도 있었다.

2002년 2월에 아일랜드 최대은행인 AIB(Allied Irish Bank)의 미국 현지법인인 올퍼스트은행 직원인 존 루스낙이 1년간 거액의 손실을 감추고 외환투기기를 지속하여 7억 5천만달러(7천5백억원/1달러=₩1,000)의 누적 손실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올퍼스트은행은 미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미국 50대 은행에 속한다. 1995년 입사한 루스낙은 현물 및 선물거래를 하면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옵션거래를 하고 있다고 상급자 및 통제 부서에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투기성 거래를 계속하다가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AIB는 미국 현지법인에 조사팀을 파견하여 금융사고의 내역을 조사하고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 등을 감독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지법인의 임원 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³¹⁾

4) 중국

2002년 4월에 조선족 모기업 회장이 중국 은행을 상대로 10억위안(약1,30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건이 있었고, 2005년 1월에는 광둥성의 한 민간기업인이 공직자 80명에게 뇌물을 주고 위

조한 서류로 13년간 은행에서 74억위안(약 1조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대형 대출사기 사건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2005년 1월에는 농업발전은행의 전 부행장이 은행자금 8억위안을 개인 주식 투자자금에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2월에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중국은행 하얼빈 지점장과 모기업의 경영자가 공모하여 은행에치금 등 10억 위안 이상을 불법 인출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도 우리 나라와 유사한 횡령·사기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사고자의 처벌수준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최근 중국정부는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있다. 중국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건설은행의 주해구지점장이 1억 1천만위안(약160억원)의 은행 공금을 횡령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허난성에서 건설은행의 서류를 조작하여 2천만위안(약28억원)을 횡령한 회계담당자와 공범 1명은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중국은행의 한지점 직원은 1,030만달러를 은행에서 빼내려는 것을 도운 혐의로 사형을 당하였다. 중국의 처벌강화정책이 금융사고 방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예비 사고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범죄행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³²⁾

5) 프랑스

2008년 1월 프랑스 2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에서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 주택 담보대출)부실 여파로 신용경색에 빠진 유럽 금융권에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건

이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2008년 1월 24일 한 중개인의 사기를 동원한 선물투자자 49억유로(약6조 7,953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이 중개인이 ‘지난 해와 올해 해에 걸쳐 권한을 벗어난 광범위한 부정 거래로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에서 트레이더로 일하는 제롬 케르비엘이 이번 사고의 장본인이다. 다니엘 부통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모든 통제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지식을 지닌 한 중개인이 단독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주주들한테 사과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사고가 난 거래를 청산했다. 문제의 인물은 2천만유로 이상 다룰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른 직원의 명의를까지 도용해 거래를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지난해 매수도 포지션을 유지하던 그가 올해 들어 증시에 급락하는 데도 매수포지션을 취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직원 한명이 저지른 금융사기로는 사상 최대의 규모이며,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사기로도 최대 규모였다. 2014년 3월 장본인 케르비엘은 징역 3년형의 확정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³³⁾

Ⅲ. 금융사고 예방 및 대책

1. 금융사고 예방

1.1 국내 금융사고 예방대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우리나라보다 금융사고가 낮은 금융선진국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비교하여 보고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사고 유형별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1.1 횡령 관련 사고예방 대책

횡령과 유용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객예금 횡령

고객예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인출 영업점에서는 책임자가 해지 거래의 정당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자금관리 부서의 별도 사고예방대책이 필요하고 직원에 대한 사고예방 철저, 직원관리 철저, 직원의 근태상황, 금전적인 문제 등에 대한 관찰 및 정신교육을 강화한다. 영업점에서는 대 고객 예금 잔액조회는 매월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1) 무통장, 무인감으로 편의 취급한 계좌
(2) 예금 잔액 기준이 고액인 계좌 (3) 통장, 인감을 보관중인 거래 (4) 사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고객의 예금에 대하여는 잔액 조회서를 발송하고, 이상이 있다고 회송된 계좌는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를 취한다.

2) 대출금 유용

일일감사자나 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동태를 주시해야하며, 일상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매일 일계표(시산표)상 금액 증감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대사해야하고, 제도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대출 실행에 대한 통제로서, 복수책임자의 사전결재 또는 여신심의회를 개최한다. (2) 대출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여신취급 관련 책임자의 결제를 받아 실행하고 전결권자의 승인 전 대출을 할 수 없으므로 승인조건을 반드시 이행한다. (3) 자점감사 요원은 신규대출 명세를 출력하여 취급 일자별로 증서를 대사한다.³⁴⁾

1.1.2 금품수수 관련 사고예방 대책

직원에 대한 윤리관 확립, 관리, 감독제도의 철저한 도입으로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및 복무자세를 철저히 확립한다.
- 2)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하여 임직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한다.
- 3) 근무기강을 확립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직업의식을 확립한다. (2) 근무시간 준수(지각, 무단이석, 무단외출 엄금)한다. (3) 공적업무를 빙자한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를 금지한다.(4) 부업 및 과도한 부채로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를 근절시킨다 (5) 상사, 동료 및 부하직원간의 불화 등으로 조직 내 융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시킨다.
- 4) 내부관리 강화 및 분명한 업무처리로 사고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한다.
- 5)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관찰을 강화한다.³⁵⁾

1.1.3 금융실명제 위반관련 사고예방 대책

실명확인인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하고,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여부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원본으로 실명을 확인하며, 위임장 징구 시에는 법인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것인지 철저히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업무규정에 따른 업무준수 교육을 강화 한다.³⁶⁾

1.1.4 사적금전 대차 관련 사고유형 대책

직원에 대한 정규, 비정규 재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근무상태와 근무기강에 관한 태도를 확립하도록 하며,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윤리의식 및 복무자세를 확립한다.
- 2) 조직역량의 총동원체제 구축한다.
- 3) 부패척결을 위한 근원적 제도 혁신 및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 4) 신바람 나는 직장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 한다.
- 5) 사적금전대차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한다
- 6) 금융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용한다.
- 7) 사고예방대책 준수를 철저히 한다
- 8) 상시적인 직원 교육을 통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한다.³⁷⁾

1.1.5 도난, 피탈 관련 사고유형 대책

1) 창구 피탈 사고

창구에서 감시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수표 피탈 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텔러 별로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재를 보유하도록 하고 외부인의 접근 불가능한 곳에 당일 소요분을 보관토록 한다. 현금을 다루는 직원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 무감각하게 영업자금을 책상 등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 외환업무를 분장할 경우에 반드시 직원의 언어능력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지속적인 OJT를 활용하여 업무처리 기본능력을 키우도록 한다.³⁸⁾

2. 금융선진국의 사고예방 대책

금융선진국의 금융사고는 국내의 금융기관

금융사고 보다 훨씬 낮은 금융사고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바로 내부통제시스템 혁신을 들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방법은 은행의 실정에 맞는 지배구조를 토대로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 기능을 재정비하고 내부통제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을 재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산 등을 통한 상시감시 시스템의 강화 또한 필요하다.³⁹⁾

2.1. 내부통제 기능 강화

국내 소재의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은행과 비교하여 금융사고가 훨씬 적은데 그 비결로 거미 줄처럼 꼼꼼하게 짜여진 내부통제 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HBSC 서울지점의 경우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 외에도 서울지점 자체감사와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아시아 태평양 1역본사 정기 감사와, 내부크로스 체크라는 3중의 내부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씨티은행의 경우는 준법 감시인의 역할과 권한이 매우 커서 수시로 내부감사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고 있다. 씨티은행, 도이체방크, HBSC 등 세계적인 은행들이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정자금 차단시스템(Anti-money laundering system)은 돈세탁 방지와 함께 내부직원에게 의한 금융사고 예방을 막고 있다. 특히 모든 입출금 거래를 정밀하게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미리 적발하여 자소로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고, 금융기관 직원의 지연, 학연, 혈연관계까지 미리 파악하여 전산망에 입력해 둠으로써 금융기관 직원과 외부사람과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포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일단 비정상적인 거래로 포착

되면 해당직원에게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중지,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단계별로 취하게 된다.⁴⁰⁾

2.2. 자체 통제 시스템 구축

미국의 경우 FBI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약 32%정도가 내부 임직원이 연루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임직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실수나 각종, 법·규정 위반 또는 잘못된 의사결정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포함된다. 따라서 운영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단위사업부분의 자체 운영위험 관리, 독립적인 운영위험 관리 그리고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점검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각 은행들은 일관성 및 계속성의 기준에 의거하여 주요 영업부분의 운영위험의 노출 규모와 사건의 유형을 잘 파악하여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⁴¹⁾

2.3 보험 전략 활용

운영위험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험 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기나 종업원의 절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상해주는 Bankers Blanket Bond가 있고, 컴퓨터와 관련된 손실을 커버해 주는 Employment Practices Crime, 직원 및 고용과 관련된 손실을 커버해 주는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d 보험 등이 있다.⁴²⁾

2.4 운영위험 담당 부서의 독립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담당 부서는 타 부서와 연계되

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하여 객관적인 운영 위험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서로 이해상충 발생 시 이사회나 최고경영자가 이를 직접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 관리부서는 전사적인 운영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 및 성과의 감사, 감독, 지속적인 검토와 변경에 대한 책임을 담당한다.⁴³⁾

다음으로 금융선진국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운영리스크 관리가 향후 금융기관의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운영리스크에 조기대응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계량적 모델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각 금융기관이 처한 상태에서 가장 쉬운 방법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계량화를 통해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축적할 데이터를 분류하고 계량화가 쉽도록 집적·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운영리스크는 계량적 모델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량적 관리와 함께 정성적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계량화할 경우에는 운영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운영리스크의 특성상 관리를 위해서는 본사의 특정 부서만 관여하기보다는 모든 사업부문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사적 차원에서 운영리스크 담당자를 임명한 후에는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운영리스크 관리의 진행방법을 전사적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다.⁴⁴⁾

IV. 결론 및 요약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 유형을 보면 횡령, 금품수수, 금융실명제 위반, 사적급전, 전자금융, 도난, 피탈, 컴퓨터관련 사고 등으로 사고유형이 다양하고 여러분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200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평균적으로 매년 약 470여건이 발생하므로 일평균 1.9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금융사고의 피해금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5년의 경우는 금융사고 건수는 적었으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고는 단순히 금융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금융기관의 불신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 신용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발생 후 활동으로 나누어 그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점의 일일감사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단말기 조작에 따른 책임카드 운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거래실무자와 확인자의 업무 분리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라. 명령휴가제 및 자체 내부통제교육 실시상황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마. 내부통제시스템 작동상태에 대한 영업점장의 수시확인 여부 등으로 영업상 이상 징후를 자동 체크할 수

있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개발 또는 보완하여 운영토록 한다.

둘째, 내부통제 시스템의 철저한 운영과 병행하여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가. 주식 과다투자, 채무 과다 보유, 사생활 문란 등의 사고 잠재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밀 감찰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나. 직원들의 직업관과 윤리의식, 애사심 고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다. 금융사고 제보센터를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는 중대한 범죄임을 홍보를 통하여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방책은 모든 국민의 관심과 직원들의 참여로 근절될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한다. 또한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포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범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여 그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토록 한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가. 대출실행 직후 콜센터 등을 통해 고객 본인에게 직접 유선으로 대출사실을 확인하거나, SMS 인증을 통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일일거래, 주별거래, 월별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가. 각 금융거래에 대한 대조작업 및 확인의 누락으로 인하여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철저한 일일, 주별, 월별 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나. 감시기구(내부/외부)를 별도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취약한 금융거래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가.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 거래는 거액 이체·출금, 대출 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문자통보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제3자가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나.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고에 따른 고객 피해나 금융거래 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은행과의 금융거래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고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다. 고객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지체 없이 은행에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공시내용을 확충하여 금융사고 예방 및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고 발발 후 활동에 대한

대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가.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제재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부과하고 취약부문 정기점검 등 예방실적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경영진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각 금융권역별로 제정하여 각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금융사고자 형사고발기준』의 철저한 시행이 있어야 하며, 사고자에 대한 각 금융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 재취업이 절대 불허되게 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부실 관련자(부실 채무기업 포함)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등 사고자의 전면적인 재산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사고금액에 대해선 끝까지 재산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금융감독원. 금융사고 정의. 2007
2. 국회기획재정위 박원석, 최근 10년간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 자료. 2014
3. 김완식, 금융사고의 발생원인과 사고예방 대책을 위한 제언. 2011.고려대학원논문.pp3
4. 류인호, 금융기관의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2005. 건국대학원논문.pp11-12
5. 이철수 외 공저,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6. 이철수 외 공저,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7. 류인호, 금융기관의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연구. 2005. 건국대학원논문.pp12
8. 전게서.pp13
9. 전게서.pp13-14
10. 전게서.pp14
11. 전게서.pp14-15
12. 전게서.pp23-24
13. 금융감독원, 2012년금융사고 현황 및 감독 대응 방안. 2103.pp3-4
14. 전게서.pp4
15. 전게서.pp4-5
16. 김완식, 금융사고의 발생원인과 사고예방 대책을 위한 제언-영업점 금융사고 사례 중심으로-2011.고려대학원논문.pp3-4
17. 전게서.pp4
18. 김원, 은행·비은행권 금융사고의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4권 2호,2003.pp4
19. 전게서.pp4-5
20. 전게서.pp5
21. 전게서.pp6
22. 전게서.pp7
23. 전게서.pp8
24. 전게서.pp8
25. 전게서.pp9
26. 전게서.pp9-10
27. 전게서.pp10-11
28. 박규현, 금융기관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연구. 2010. 경성대학논문.pp203
29. 전게서.pp203-204
30. 전게서.pp204-205
31. 전게서.pp206-207
32. 전게서.pp207-208
33. 전게서.pp208-209
34. 류인호, 금융기관의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연구. 2005. 건국대학원논문.pp52-53
35. 전게서.pp53-54
36. 전게서.pp54
- 37.전게서.pp54-55
38. 전게서.pp59
39. 김완식, 금융사고의 발생원인과 사고예방 대책을 위한 제언-영업점 금융사고 사례 중심으로-2011.pp22
40. 류인호, 금융기관의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연구. 2005. 건국대학원논문.pp69
41. 박애경. 은행의 효율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신바젤협약 시행에 따른 외국계와 국내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비교 중심으로-. 2007.한양대학원논문.pp39
42. 전게서.pp41
43. 전게서.pp42
44. 박동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2011.성균관대학원논문.pp46-47